

1. 집행기관의 정원 : 11,531명
2. 본청·소방학교·소방서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4,593명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332명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23명

총 계 : 16,679명"를

"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에는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16,679명으로 총수를 정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.) : 11,531명
2. 본청·소방학교·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4,593명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332명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23명"

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

○제3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의 규정)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예 의거 신설한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생각되고

○부칙 제2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별표3(특별시·광역시 및 도의 일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정원표)의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정원이 7명에서 4명으로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3명에 대하여 제2조제1호에 증원하여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지며

○부칙 제3조(한시정원)에서 집행기관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은 동 개정조례안 제2조(정원의 총수)를 개정함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4. 질의·답변 : 생략

5. 수정안의 요지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8년 10월 20일, 정현균의원 외 1인

나. 수정이유

○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이 '98.8.31자로 개정

공포됨에 따라 이에 의거 정원의 총수를 구분하여 정하려는 것이나 관계 조문(제2조)의 체계에 있어 정원의 총수를 각 호 최하단에 밑줄을 긋고 표기하여 구성상의 어색함이 있고

○집행기관의 정원을 상기 규정(대통령령)과 같이 명확히 하기 위함.

다. 수정 주요골자

○정원의 총수는 본문에서 정하고 각 호 최하단에 밑줄을 긋고 표기한 총계는 삭제함.(안 제2조)

○집행기관의 정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"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"를 ()로 내서함.(안 제2조)

6. 심사결과

○수정안 의결(재적의원 12명, 출석의원 9명 전원일치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
심사보고서

의안
번호 89

1998. 10.
기획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

1998년 10월 2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

1998년 10월 2일

다. 상정일자

제10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(1998년 10월 20일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탁병오)

가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의 규제시책을 심의·조정하고 규제의 심사·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1) 기능(안 제2조)

가) 기존 규제의 심사,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
- 나)규세의 신설·강화 등에 관한 사항
- 다)규세의 등록·공표에 관한 사항
- 라)규세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·평가에 관한 사항

2)위원회 구성(안 제3조)

가)위원장 2인(행정1부시장, 위원중 시장이 위촉한 자)포함 12인이내

나)위원 :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우리 시 3급이상 공무원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

3. 실무위원회(안 제5조)

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.

4)회의(안 제6조)

가)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나)회의 공개원칙, 공익 등 사유로 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 비공개 가능

5)의견청취(안 제7조)

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 관계공무원, 이해관계인, 전문가등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·발언

6)간사(안 제8조)

규세 개혁 주무부서의 과장(조직제도담당관)

7)수당(안 제9조)

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 지급

다.참고사항

(1)관계법규 : 행정규세기본법 제3조제3항 제3조(적용범위) ①~②(생략)

③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·규칙에 규정된 규제 등록 및 공표,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, 기존 규제의 정비, 규제 심사 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(2)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3.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동수)

○본 조례안은 행정규세기본법이 '98년 3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조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규제시책을 심의·조정하고 규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은

있으나 필요하다고 보여지며

○그 기능은 기존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·시행과 심사, 규제의 신설·강화의 심사, 규제의 등록·공표 및 의견수렴 및 처리,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·평가 등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시장원리를 효율적으로 도모하여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

○그러나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보다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단일 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집약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

○부득이 실무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을 시는 구성(위원수, 위촉대상 등) 및 기능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○아울러 본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기능으로 볼 때 시민의 대표성이 있는 시의원을 포함토록 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.

4.질의·답변 : 생략

5.수정안의 요지

가.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8년 10월 20일, 장하운의원 외 1인

나.수정이유

○실무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를 명확히 하며 시민의 대표성이 있는 시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위원수를 늘려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.

다.수정 주요골자

가)위원회 구성(안 제3조)

1)위원수 : 위원장 2인 포함 15인이내
※원안의 위원수 - 12인이내

2)위원 :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과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서울시 3급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

나)실무위원회(안 제5조)

1)구성 :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 위원장이 위촉하고,

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.

2)기능

-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사전검토·조정 등에 관한 사항
-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전문적인 조사·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
-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

6.심사결과

- 수정안 의결(재적의원 12명, 출석의원 7명 전원일치)

7.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재정운영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

| | |
|----------|----|
| 의안 번호 | 90 |
|----------|----|

1998. 10.
기획경제위원회

1.심사경과

가.제안일자 및 제안자

1998년 10월 2일, 서울특별시장

나.회부일자

1998년 10월 2일

다.상정일자

제10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(1998년 10월 20일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2.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탁병오)

가.제안이유

우리市 재정운영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예산편성조례 등 4개 조례를 통합 규정하고 기금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재정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,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나.주요골자

(1)예산편성의 기본방향(안 제4조)

- (가)예산의 정책기능 적극수행
- (나)시민 편익에 중점을 둔 자원배분
- (다)지역간 균형개발 적극추진
- (라)재정운영의 경영마인드 확대

(2)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8조·제9조)

- (가)기능 :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관련사항 심의

(나)구성 : 위원장·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5인 이내 위원

- ①위원장 : 시장이 지명하는 부시장
- ②부위원장 : 기획예산실장
- ③위원

-서울특별시 3급이상 관계 공무원
-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

(3)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10조·제11조)

(가)기능 : 민자유치사업 주요시책 등 심의

(나)구성 :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

- ①위원장 : 시장이 지명하는 부시장
- ②부위원장 : 기획예산실장
- ③위원

-서울특별시 3급이상 관계 공무원
-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

(4)기금설치의 기본원칙(안 제20조)

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 설치

(5)기금의 관리·운용(안 제21조제3항)

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시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,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 가능

(6)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횟수, 공개대상 등 규정(안 제28조 내지 제32조)

다.참고사항

- (1)관계법규 : 지방자치법 제118조·동법 제133조, 지방재정법 제16조의2·동법 제30조·동법 제118조의3,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
※관련내용 별첨
- (2)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3.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동수)